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-589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5월 17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·정비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문 삭제·정비 (20개 조문, 1개 별표)

1) 출장공무원 · 복장 및 제복 · 재직기간의 계산, 휴가의 종류·연가일수, 공가·병가 규정 등 상위법령 중복 조문 등 삭제

2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만으로도 복무관리가 가능한 내용으로, 복무 주요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문 정비

나. 특별휴가 중 재난·재해 관련 업무 수행 시 특별휴가 부여 근거 조문 및 특별휴가 일수 확대

다.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(참조 : 총무과장, ☎ 450-7118, FAX: 2201-1988, E-mail : woosong9206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· 법인의 경우 단체명 · 법인명과 그대표자)